

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(제2차 교육위원회) 2021. 6. 11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임동현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: 2021년 5월 31일

O 회부일자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통합을 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O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O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O 운영계획 수립(안 제5조)
- O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(안 제8조)
- O 실태조사 등(안 제9조)
- O 교원의 연수 등(안 제10조)

- O 학부모 교육 등(안 제11조)
- O 지도 및 감독 등(안 제12조)
- O 협력체계 구축(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 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부모, 관련 기관 및 단체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6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의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O 안 제7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구·학습보조 기·보조공학기 등의 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 도록 하였으며, 안 제9조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.

- 안 제10조에서는 교원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, 안 제11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하여 학교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O 안 제12조에는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과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 였음.
- O 본 조례의 제정은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